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5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권향엽・이병진・염태영

송재봉 • 이재강 • 문진석

박홍배 • 양부남 • 한정애

주철현 · 민형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

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하고 있음.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, 지방자치단체가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.

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유지·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,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 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 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3제1항 중 "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"를 "예산의"로, "일부를"을 "전부 또는 일부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국가산업단지 기반시	제29조의3(국가산업단지 기반시
설의 유지보수비 지원) ① 국	설의 유지보수비 지원) ①
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	
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	
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<u>안</u>	<u>এ</u>
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	<u>산의</u>
<u>우에는 예산의</u> 범위에서 해당	
기반시설의 유지・보수 또는	<u>전부 또는 일부를</u>
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<u>일부를</u>	.
지원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